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 품 요 약 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1. 상품의 특이사항

Q: 『신한(간편기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특이시항은 무엇인가요?

A:

-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일정기간 동안 해약환급금 수준을 낮추어 보험료를 좀 더 낮게 설계가능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보험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7년경과 후부터 사망시점 까지(최대 20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체증하며,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부터 계약자적립액 인출 및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유형은 "일반심사형"과 "간편심사형"이 있으며, "일반심사형"은 "일반심사보험"으로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보험을 말합니다. 또한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보험"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이란 무엇인가요?

A: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반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고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일반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되고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일반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Q: 이 상품의 "간편심사」는 무엇인가요?

A: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나이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외의 병력정보를 사용하여 계약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Q: "합산보너스』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A:

- 이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아래의 "합산보너스"를 "납입완료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I" 및 "장기유지보너스 II"로 나누어 각각의 보너스 발생일에 "예정적립액" 및 "계약자적립액"에 더하여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적립합니다.
 - (1) **합산보너스** =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합산보너스지급률
 - (2) 합산보너스지급률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합산보너스지급률	34.0%	36.5%	36.5%

(3) 납입완료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I, II 발생일 및 발생금액

구분	보너스 발생일	납입기간	발생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5년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90.0%"에서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시점의 예정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납입완료보너스	완료일	7년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90.0%"에서 납입완료보너스 발생일 시점의 예정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10년납	0
		5년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122.7%"에서 장기유지보너스 I 발생일 시점의 예정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장기유지보너스 I	보험계약일부터 1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7년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119.5%"에서 장기유지보너스 I 발생일 시점의 예정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10년납	"주계약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년수) X 115.0%"에서 장기유지보너스 I 발생일 시점의 예정적립액을 차감한 금액
장기유지보너스॥	보험계약일부터 20년시점의 계약해당일	5,7,10년납	합산보너스에서 납입완료보너스 및 장기유지보너스 I 발생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격의 "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너스는 발생하지 않고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각각의 "보너스 지급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가 각각의 "보너스 발생일" 전에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너스 지급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Q: "월대체보험료』란 무엇인가요?

A: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관리비용의 합계를 말합니다. 월대체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Q: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로 인하여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수 없게 될 경우에는 계약이 조기에 해지될 수 있습니다.

Q: "추가납입」과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을 할 수 있나요?

A:

-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제도성특약인 추가납입특약 II (무배당)에 따라 추가납입특약 II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의 주계약 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특약 II 보험료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주계약에서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예정적립액 계약자적립액」과 「보험료 납입시점의 추가납입특약Ⅱ 납입한도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납입한도로 합니다.
- → 추가납입특약 II 보험료의 납입한도는 납입기간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주계약 기본보험료 × 12 × 100%입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와 추가납입특약Ⅱ 보험료의 합산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100%(계약자적립액과 추가 납입특약Ⅱ에 의한 추가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합산한 금액)로 합니다.
- 계약일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년도기준으로 연 12회에 한하여 **추가 계약자적립액(**단, 추가 계약자적립액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 신청시점 주계약 해약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 이내에서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계약의 추가납입특약 II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추가 계약자적립액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에서 우선 인출됩니다.
- **>>>** 주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인출 후 계약자적립액은 연간 기본보험료[월 기본보험료의 1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 가 인출시점까지의 계약자적립액 인출금액과 추가납입특약Ⅱ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된 금액의 총 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특약보험료는 제외)와 추가납입특약Ⅱ 보험료의 합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면제」는 어떤 경우에 되나요?

A:

-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또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O: "보험료 할인」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가족우대특약 할인

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에 규정한 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로서, 주민등록상함께 거주하는 자일 경우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5% 할인(단, 제2회 이후의 보험료에 대하여할인신청 접수 이후부터 적용)

단체취급 보험료 할인

동일 대상 단체에 소속한 5인이상 가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향후 보험료 납입시 2회이상 보험료부터 납입회 차별로 보험료의 1.5% 할인 (추가납입보험료 제외)

Q: "New연금전환특약(무배당)』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Α:

>>>>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연금계약으로 전환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연금전환 시점에 회사에서 적용하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하여 계약을 전환해 드립니다.

연금전환 시점의 연금전환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최초에 이 보험계약을 계약하는 시점의 연금전환특약과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와 산출기초율[연금사망률, 계약관리비용, 전환당시 산출기준에 따른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안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 내에 지급 해당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자격요건

① 보험종류

구 분	명칭	보호	보험 종 목		
주계약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일반심사형/ 간편심사형		

- (취) 1. 다만, "일반형"의 경우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당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운영합니다.
 - 2. "간편심사형"의 경우 상품명 신한 다음에 "(간편가입)"을 부가합니다.

②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피보험자 가입나이

	구 분			납입기간	가입나이
ㅈ게야	신한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심사형	조시	다기1이크나	만15세~70세
주계약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간편심사형	종 신	5/7/10년납	30세~70세

- ※ 만나이가 아닌 나이는 보험나이를 말합니다. 보험나이에 대한 설명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③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④ 가입한도

구 분	가 입 한 도		
일반심사형	1,000만원 ~ 30억원		
간편심사형	1,000만원 ~ 20억원		

[※] 다만, 주계약 가입한도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기존에 가입한 보험 가입내용 및 가입경로 등에 따라 주계약 가입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건강진단 여부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기존 다른 보험 상품의 가입유무, 나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사항

1. 상품의 구성

주 계 약	신한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특 약	+ New연금전환특약(무배당) +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 선지급서비스특약 + 신한단체취급보험료할인특약 + 장애인가족우대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추가납입특약॥(무배당) +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 + 표준하체인수특약	제도성 제도성 제도성 제도성 제도성 제도성 제도성 제도성 제도성
] + <u>표준아세인수특</u> 약	

수계약	수 계 약 전에(간편가입)모아너느림Plus송신모엄(무배당, 애약완급금 일무시급영)					
	+	New연금전환특약(무배당)	제도성			
	+	보험금 대리청구 지정서비스특약	제도성			
	+	사후 사망보험금 신속지급특약	제도성			
E Ot	+	선지급서비스특약	제도성			
특 약	+	신한단체취급보험료할인특약	제도성			
	+	장애인가족우대특약	제도성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제도성			
	_ +	추가납입특약((무배당)	제도성			

2. 보험금 지급내용

(1) 주계약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 (기년 ["간편· 유가 발 보험금: 이 기년 : (기년 : (기년 : (기년 : (기년 : (기년 기년 가망보험금 지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기본보험료 납입 중 : (기준사망보험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큰 금액 ["간편심사형"에 한하여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시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사망보험금으로 합니다] ○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 :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자적립액의 101%,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가장 큰 금액 				
사망보험금				구 분	사망시점	지급액
			7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 사망 보 업금	7년이상 27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 보험계약일에서 7년경과된 계약해당일부터 사망시점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체증한 금액"		
			27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부표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또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정상적으로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보고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합니다.
 - 3. 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자적립액의 인출 시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액은 기준사망보험금에 더합니다. 다만, 이 계약의 추가납입특약॥에 의한 추가 계약자적립액 인출 금액과 추가납입특약॥ 보험료 납입액은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차감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 4. 7년(또는 2년)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7년(또는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7년이상 27년미만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계약일부터 27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27년이상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27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이후를 말합니다.
 - 5. 각각의 "보너스 발생일"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너스는 발생하지 않고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각각의 "보너스 지급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6. 각각의 "보너스 발생일" 전에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보너스 지급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각각의 "보너스 지급적립액"을 해약환급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 7. '5.' 및 '6.'의 "보너스 발생일"이라 함은 제2조의3("보너스"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보너스 발생일을 말하며, 각각의 "보너스 발생일"에 보험료 납입을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보험료[기본보험료 총액을 납입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 납입일을 각각의 "보너스 발생일"로합니다.

3.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기본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기본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사기에 의한 계약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실제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다만, "인출 및 감액 등으로 회사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본인 확인 및 위조 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 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간편심사형"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의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 로 "일반심사형"가입을 원하여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형"에 가입한 경우. 다만,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사항

1.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 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시 불이익사항 보험가입시 청약서상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직업, 운전, 현재와 과거의 건강상태, 신체장해 등)은 피보 험자가 직접 사실대로 작성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료 산출기초

 Π

1.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

Q: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u>연복리 2.75%</u>, 10년 초과 <u>연복리 1.5%</u>입니다.

2.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해지율

Q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해지율이란 무엇인가요?

A: 한 개인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해지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 갑니다.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해지율은 0.10%~27.70%입니다.

3.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률

Q :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 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남 자		여 자			
一	20세	40세	60세	20세	40세	60세	
무배당 예정 경험 사망률 [보험개발원 생명장기 제2024-0250호(2024.01.23)]	0.000278	0.000708	0.003703	0.000176	0.000491	0.00166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〇: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계약자 배당은 배당상품에 한하여 실시를 하며, 무배당 상품은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 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 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IV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Q: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우리 신한라이프생명보험회사는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일반심사형, 가입금액 1억원, 40세, 10년납, 월납, 보너스포함, 단위 : 원 >

경과		남자		여자			
경과 기간	보험료누계(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보험료누계(A)	해약환급금(B)	환 급률 (B/A)	
3개월	4,553,400	0	0.0%	4,479,000	0	0.0%	
6개월	9,106,800	402,196	4.4%	8,958,000	485,200	5.4%	
9개월	13,660,200	2,238,295	16.3%	13,437,000	2,291,600	17.0%	
1년	18,213,600	4,074,393	22.3%	17,916,000	4,098,000	22.8%	
2년	36,427,200	11,610,936	31.8%	35,832,000	11,512,700	32.1%	
3년	54,640,800	19,345,129	35.4%	53,748,000	19,121,800	35.5%	
4년	72,854,400	27,282,771	37.4%	71,664,000	26,930,750	37.5%	
5년	91,068,000	35,430,364	38.9%	89,580,000	34,945,600	39.0%	
6년	109,281,600	43,795,057	40.0%	107,496,000	43,172,650	40.1%	
7년	127,495,200	52,384,400	41.0%	125,412,000	51,618,500	41.1%	
8년	145,708,800	60,736,050	41.6%	143,328,000	59,841,250	41.7%	
9년	163,922,400	69,325,050	42.2%	161,244,000	68,294,550	42.3%	
10년	182,136,000	209,456,400	115.0%	179,160,000	206,034,000	115.0%	
15년	182,136,000	218,092,892	119.7%	179,160,000	214,415,688	119.6%	
19년	182,136,000	225,472,460	123.7%	179,160,000	221,581,912	123.6%	
20년	182,136,000	240,728,263	132.1%	179,160,000	236,770,905	132.1%	
25년	182,136,000	251,747,520	138.2%	179,160,000	247,515,111	138.1%	
30년	182,136,000	263,580,315	144.7%	179,160,000	259,073,471	144.6%	
35년	182,136,000	276,257,029	151.6%	179,160,000	271,489,171	151.5%	
40년	182,136,000	289,762,818	159.0%	179,160,000	284,775,396	158.9%	

< 기준 : 간편심사형, 가입금액 1억원, 40세, 10년납, 월납, 보너스포함, 단위 : 원 >

경과		남자			여자	
경과 기간	보험료누계(A)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보험료누계(A)	해약환급금(B)	환 급률 (B/A)
3개월	4,745,100	0	0.0%	4,642,200	0	0.0%
6개월	9,490,200	272,671	2.8%	9,284,400	400,557	4.3%
9개월	14,235,300	2,151,807	15.1%	13,926,600	2,239,411	16.0%
1년	18,980,400	4,030,943	21.2%	18,568,800	4,078,264	21.9%
2년	37,960,800	11,747,336	30.9%	37,137,600	11,630,979	31.3%
3년	56,941,200	19,632,029	34.4%	55,706,400	19,358,893	34.7%
4년	75,921,600	27,726,471	36.5%	74,275,200	27,294,157	36.7%
5년	94,902,000	36,040,264	37.9%	92,844,000	35,442,921	38.1%
6년	113,882,400	44,585,557	39.1%	111,412,800	43,811,636	39.3%
7년	132,862,800	53,373,050	40.1%	129,981,600	52,407,600	40.3%
8년	151,843,200	61,906,950	40.7%	148,550,400	60,767,000	40.9%
9년	170,823,600	70,694,850	41.3%	167,119,200	69,365,900	41.5%
10년	189,804,000	218,274,600	115.0%	185,688,000	213,541,200	115.0%
15년	189,804,000	227,569,735	119.8%	185,688,000	222,490,611	119.8%
19년	189,804,000	235,511,322	124.0%	185,688,000	230,139,505	123.9%
20년	189,804,000	248,066,404	130.6%	185,688,000	242,783,540	130.7%
25년	189,804,000	259,606,354	136.7%	185,688,000	253,974,963	136.7%
30년	189,804,000	271,957,333	143.2%	185,688,000	266,005,805	143.2%
35년	189,804,000	285,128,400	150.2%	185,688,000	278,895,316	150.1%
40년	189,804,000	299,062,577	157.5%	185,688,000	292,626,135	157.5%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해약공제액포함) 및 계약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 예시는 각 보험년도 계약해당일 보너스 발생 직후 금액이며, 각 보너스 지급적립액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VI 보험가격지수

Q: 보험가격지수란?

- A: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평균공시이율), 평균해지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기준:40세)

상품명		납입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기간	남	여	(만원)	
신한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7.II	1013	198.3%	212.8%	10,000	
신한(간편가입)모아더드림Plus종신보험 (무배당,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	10년	183.4%	201.9%	10,000	